무배당 매직( )안심종합보험(L5.09)

1종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중도인출금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이 계약의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그청구에따라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때에는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하며, 회사는 제1항에서정한바에따라최고하고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지급합니다.

② 보험료수금방법이회사의방문수금또는계약자의은행수납방법으로약정되어있는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또는은행납입통지서의미교부로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를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하거나은행납입통지서를다시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그수금또는재교부일부터 15일이되는날을새로운납입기일로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위한보험의경우특정된수익자포함)에게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상계할수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기 15일 이전까지서면또는전화(음성녹음)로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 받지아니한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회사가정한절차에 따라계약의부활(효력회복)을청구할수있으며, 회사가 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효력회복)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보험료와이에대한연체된이자(보장보험료에대해서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부활(효력회복)에관하여는제15조(보험계약의성립), 제16조(회사의보장의시기 및 종기), 제32조(계약전알릴의무) 및 제34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등의지급(회사의주된의무)

제14조(보상하는손해)

① 회사는보험기간중 보험목적이화재(벼락을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합니다)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화재에따른손해
2. 화재에따른소방손해
3. 화재에따른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제1호, 제2호의손해를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전용주택및이에수용된가재일경우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위험으로인하여 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 비용은포함하지아니합니다) 및 상차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아니하는위험으로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15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아래의물건은보험목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1. 통화(기념주화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부착물은 제외합니다)

② 아래의물건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수있으며 점당 1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아래의물건은다른약정이없으면보험목적에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 가. 건물의부속물 : 피보험자소유인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부착물 : 피보험자소유인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다. 건물의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주택을보험목적으로 하는경우보험목적이라함은아래의물건을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중다음의것또는그수용가재
   -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나. 주택의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수용하는 건물
   -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모두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또는복리시설을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아래의용도로사용하는건물및그수용가재
   -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치료 (안수, 침구(침 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6조(보험목적에 대한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건물이나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중대한과실
2. 계약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4. 화재가났을때도난또는분실
5.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6.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전용주택의경우는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7. 동결로인한수도관, 수관또는수압기의파열

⑧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있어서 뚜렷이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⑨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⑩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솥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중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도인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8조(손해방지의무)

솥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솥 회사는 제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20조(지급보험금)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솥 회사는 제20조(지급보험금)의 지급보험금에 제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19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

솥 회사가 지급할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솥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솥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합니다

제2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보험금의 분담)

솥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솥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3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대위권)

솥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솥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5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

험자의 소유가됩니다.

제2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계약자가 보험료를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때에는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보험료납입경과기간에따라제27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회사가적립한금액(중도인출액이있었던경우에는이를차감하여계산된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
①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보험료납입경과기간에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3.5%)을적용합니다.
②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 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28조(배당금의지급)
회사는이보험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29조(중도인출)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계약자가요청한시점에서계산된적립부분해약환급금(이계약에서 정한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후의잔액을기준으로합니다)의 50%범위 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연도기준연 2회에한하여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및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31조(보험금청구권의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보험금청구권을잃게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손해통지또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 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하거나변조한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이유없이손해의조사를방해또는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32조(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시(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33조(계약후알릴의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회사는 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34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2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②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33조(계약후알릴의무) 제1항에서 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③ 상당한이유없이손해조사를거부또는회피할때
제1항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②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을때
③ 보험을모집한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제1항에의한계약의해지가손해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1항 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손해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라는 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많은금액을지급합니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사실로생긴것이아닌것으로증명된때에는제1항에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6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0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서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

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2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방법)에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4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1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매직( )안심종합보험(L5.09)

2종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중도인출금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이 계약의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5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 비용은포함하지아니합니다) 및 상차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아니하는위험으로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15조(보험목적의 범위)

㉲ 아래의물건은보험목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① 통화(기념주화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것
② 자동차(자동2륜차, 자동3륜차를포함합니다. 단, 전시용자동차는제외합니다)
㉳ 아래의물건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보험목적이 됩니다.
① 귀금속, 귀중품(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점당 1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제외합니다.
②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 아래의물건은다른약정이없으면보험목적에포함됩니다.
① 건물인경우
㉮ 건물의부속물 : 피보험자소유인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것
㉯ 건물의부착물 : 피보험자소유인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것
㉰ 건물의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가재인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 주택을보험목적으로 하는경우보험목적이라함은아래의물건을말합니다.
① 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중다음의것또는그수용가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주택의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수용하는 건물
㉰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모두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또는복리시설을포함합니다.
② 주택병용 건물로써아래의용도로사용하는건물및그수용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 (안수,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6조(보험목적에 대한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건물이나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중대한과실
② 계약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④ 화재가났을때도난또는분실
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⑥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전용주택의경우는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⑦ 동결로인한수도관, 수관또는수압기의파열
⑧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또는다수인의집단행동에의해전국또는일부지역에있어서 뚜렷이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사태
⑨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 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⑩ 제9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사고로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전기적사고로손해가생긴그전기기기또는장치이외의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또는파열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명령에의한재산의소각및이와유사한손해
㉷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사유중고의에의한경우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18조(손해방지의무)

㉸ 회사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손해를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회사는제항의손해방지또는경감에소요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합니다)의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비율에따라제20조(지급보험금)의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20조(지급보험금)의지급보험금에제항의손해방지비용을합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더라도이를지급합니다.

제19조(손해액의조사결정)

㉻ 회사가 보상할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때와곳에있어서의보험가액에따라계산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

㉼ 회사가지급할제14조(보상하는손해)의보험금은아래에따라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같거나이상일때
: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③ 제1호 및 제2호에관계없이보험목적이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합니다

제2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3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5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2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7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3.5%)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9조(중도인출)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50%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연도 기준 연 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33조(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보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 지체 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① 보험목적에대하여이보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을맺을때

② 보험목적을양도할때

③ 그건물의구조를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이상수선할때

④ 보험목적 또는보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용도를변경함으로써위험이증가하는경우

⑤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들어있는건물을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⑥ 보험목적을다른장소로옮길때

⑦ 위이외에위험이뚜렷이증가할때

㉡ 회사는 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34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

㉠ 회사는 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2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②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33조(계약후알릴의무) 제1항에서 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③ 상당한이유없이손해조사를거부또는회피할때

㉡ 제1항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②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을때

③ 보험을모집한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제1항에의한계약의해지가손해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 제1항 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손해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라는 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많은금액을지급합니다.

㉤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제2호에해당되는사실로생긴것이아닌것으로증명된때에는제1항에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년이지났을때에는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 수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36조(주소변경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 또는 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대표자의지정)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 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이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38조(손해의통지및조사)

㉠ 보험목적에 손해가생긴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생긴건물또는그구내와거기에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조사할수있습니다.

제39조(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이를얻기어려울때에는사고발생의목격자등인근주민의확인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수익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40조(보험금의지급)

㉠ 회사는 제39조(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에서정한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배상책임손해에대한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대한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드립니다.

㉡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 경우에는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에게서면통지하여드립니다.

㉢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또는수익자의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4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2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4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절 특수건물 풍수재 손해조항

제5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이외에 아래의 위험으

로인하여보험목적에생긴손해를이특수건물풍수재손해조항에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비슷한풍재또는수재
② 항공기또는그로부터의떨어지는물체

제53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및화재손해조항제17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이외에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① 보험목적에생긴분실또는도난손해
② 원인의직접, 간접에 관계없이풍재또는수재로생긴파열또는폭발의손해
③ 원인의직접, 간접에 관계없이지진또는분화로생긴손해
④ 풍재또는수재와관계없이댐또는제방이터지거나무너져생긴손해
⑤ 바람, 비, 눈, 우박또는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생긴손해.
그러나보험목적인건물이풍재또는수재로직접파손되어보험목적에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⑥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생긴손해
⑦ 풍재의 직접, 간접에관계없이보험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사고로생긴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생긴손해
㈜ 회사는보험목적이전용주택인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제54조(준용규정)
이 특수건물풍수재손해조항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1절 일반조항및화재손해조항을따릅니다.

제3절 신체손해배상책임손해조항

제55조(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험기간중특수건물의화재로타인이사망하거나부상함으로써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부담할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드립니다.
㈜ 회사는보험목적이전용주택인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드립니다.

제56조(용어의정의)
이신체손해배상책임손해조항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②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전용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민법상의배상책임을포함합니다.
③ 타인이라 함은특수건물의소유자및그주거를같이하는직계가족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또는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4조】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특수건물의시가에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사망자에대한보험금액의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에규정한시가의결정에관한기준은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제5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생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해자 고의중과실법령위반으로 발생한 화재(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손해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연료를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 포함)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⑤ 제4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제58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양도된경우에양수인또는그지정하는자는이보험계약에의한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봅니다.

제59조(보험금의지급과보상한도)
이 신체손해배상책임조항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한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동시행규칙제2조에따라결정됩니다.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의경우에는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1](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수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에장해(이하 "후유장해" 라 한다)가 생긴때에는 [별표2-1](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에서정하는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의한실손해액의범위는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사망한경우에는제1항제1호및제2호의보험금을함께지급한다.
④ 부상한 자에게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지급한다.
⑤ 제1항 제3호의금액을지급한후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에는제2호의금액에서 동항 제3호의규정에의하여지급한금액을공제하고지급한다.
제8조(보험금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이를지급하여야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및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 명

【동 법 시 행 규 칙 제2조】

제2조 (신 손 해 액) ① 영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 에 의 한 실 손 해 액 은 화 재 로 인 하 여 사 망 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 다.
②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 하 여 신 체 상 에 상 해 를 입 은 경 우 에 그 상 해 를 치 료 함 에 소 요 되 는 모 든 비 용 으 로 한 다.

제60조(보 험 금 의 비 례 배 분)

피보험자가 둘 이 상 인 때 에 는 회 사 가 지 급 할 보 험 금 을 한 도 로 하 여 재 해 를 입 은 특 수 건 물 의 소유지분비율에 따 라 비 례 배 분 하 여 보 상 하 여 드 립 니 다 .

제61조(계 약 후 알 릴 의 무)

솈 계약자 또 는 피 보 험 자 는 계 약 을 맺 은 후 아 래 와 같 은 사 실 이 생 긴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 리 고 보 험 가 입 증 서 (보험증권)에 확 인 을 받 아 야 합 니 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 경 이 생 겼 음 을 알 았 을 때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 와 같 은 계 약 이 있 음 을 알 았 을 때
③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솥 회사는 제1항 에 따 라 위 험 이 감 소 된 경 우 에 는 그 차 액 보 험 료 를 돌 려 드 리 며 ,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

제62조(손 해 의 통 지 및 조 사)

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 와 같 은 사 실 이 있 는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그 내 용 을 서 면 으로 회 사 에 알 려 야 합 니 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 우 사 고 발 생 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 명 ,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 을 경 우 그 주 소 와 성 명
② 제3자로부터 손 해 배 상 청 구 를 받 았 을 경 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 았 을 경 우
솥 계약자 또 는 피 보 험 자 가 정 당 한 이 유 없 이 제1항 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 지 를 게 을 리 함 으로 인 하 여 손 해 가 증 가 된 때 에 는 회 사 는 그 증 가 된 손 해 는 보 상 하 지 아 니 하 며 ,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 해 배 상 책 임 이 없다고 인 정 되 는 부 분 은 보상하지 아 니 합 니 다 .

제63조(손 해 방 지 의 무)

솈 보험사고가 생 긴 때 에 는 계 약 자 또 는 피 보 험 자 는 아 래 의 사 항 을 이 행 하 여 야 합 니 다 .
① 손해의 방 지 또 는 경 감 을 위 한 일 체 의 방 법 을 강 구 하 는 일
② 제3자로부터 손 해 의 배 상 을 받 을 수 있 는 경 우 에 는 그 권 리 의 보 전 또 는 행 사 를 위 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 급 처 치 , 긴급호송 또는 그 밖 의 긴 급 조 치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합 니 다 .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 보 험 자 가 소 송 을 제 기 하 려 고 할 때 에 는 미 리 회 사 의 동 의 를 받을 일

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제 항 의 의 무 를 이 행 하 지 아 니 하 였 을 때 에 는 그 손 해 액 을 아래에 따라 결 정 합 니 다 .
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 우 에 는 손해를 방 지 또 는 경 감 할 수 있 었 다 고 인 정 되 는 부분을 뺍니다.
② 제 항 의 제 호 의 경 우 에 는 회 사 가 손 해 배 상 책 임 이 없 다 고 인 정 되 는 부 분 을 뺍 니 다 .
③ 제1항의 제4호의 경 우 에 는 소 송 비 용 및 변 호 사 비 용 과 회사가 손 해 배 상 책 임 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 상 하 지 아니합니다.

제64조(손 해 배 상 청 구 에 대 한 회 사 의 해 결)

솈 피보험자가 피 해 자 에 게 손 해 배 상 책 임 을 지 는 사고가 생 긴 때 에 는 피 해 자 는 이 약 관 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 급 책 임 을 지 는 금 액 한 도 내 에 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 급 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 사 는 피 보 험 자 가 그 사 고 에 관 하 여 가 지 는 항 변 으 로 서 피해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솥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 으 면 피 보 험 자 및 계약자는 필 요 한 서 류 . 증거의 제출, 증 언 또 는 증 인 출 석 에 협조하여야 합 니 다 .
숖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 보 험 자 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 용 으 로 이 를 해 결 할 수 있 습 니 다 .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 으 면 계 약 자 또 는 피 보 험 자 는 이 에 협 력 하 여 야 합 니 다 .
숗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 의 요 구 에 협 조 하 지 아 니 할 때 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 니 합 니 다 .

제65조(준 용 규 정)

이 신체손해배상책임손해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단, 제20조(지 급 보 험 금)은 제 외 합 니 다 .

무배당 매직( )안심종합보험(L5.09)

3종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④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중도인출금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이 계약의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해약을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그청구에따라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때에는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하며, 회사는 제1항에서정한바에따라최고하고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지급합니다.

② 보험료수금방법이회사의방문수금또는계약자의은행수납방법으로약정되어있는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또는은행납입통지서의미교부로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를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하거나은행납입통지서를다시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그수금또는재교부일부터 15일이되는날을새로운납입기일로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위한보험의경우특정된수익자포함)에게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상계할수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기 15일 이전까지서면또는전화(음성녹음)로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 받지아니한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회사가정한절차에 따라계약의부활(효력회복)을청구할수있으며, 회사가 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효력회복)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보험료와이에대한연체된이자(보장보험료에대해서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부활(효력회복)에관하여는제15조(보험계약의성립), 제16조(회사의보장의시기 및 종기), 제32조(계약전알릴의무) 및 제34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등의지급(회사의주된의무)

제14조(보상하는손해)

① 회사는보험기간중 보험목적이화재(벼락을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합니다)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화재에따른손해
2. 화재에따른소방손해
3. 화재에따른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생긴 제1호, 제2호의손해를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전용주택및이에수용된가재일경우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위험으로인하여 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 비용은포함하지아니합니다) 및 상차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아니하는위험으로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15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아래의물건은보험목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1. 통화(기념주화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차, 자동차를포함합니다. 단, 전시용자동차는제외합니다)

② 아래의물건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점당 1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아래의물건은다른약정이없으면보험목적에포함됩니다.

1. 건물인경우
   - 가) 건물의부속물 : 피보험자소유인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부착물 : 피보험자소유인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다) 건물의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주택을보험목적으로 하는경우보험목적이라함은아래의물건을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중다음의것또는그수용가재
   -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나) 주택의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수용하는 건물
   -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모두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또는복리시설을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아래의용도로사용하는건물및그수용가재
   -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치료 (안수, 침구(침 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6조(보험목적에 대한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건물이나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중대한과실
2. 계약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4. 화재가났을때도난또는분실
5.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6.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전용주택의경우는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⑦ 동결로인한수도관, 수관또는수압기의파열
⑧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또는다수인의집단행동에의해전국또는일부지역에있어서 뚜렷이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사태
⑨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 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⑩ 제5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사고로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전기적사고로손해가생긴그전기기기또는장치이외의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또는파열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명령에의한재산의소각및이와유사한손해
솥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사유중고의에의한경우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18조(손해방지의무)
솩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손해를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솥 회사는제항의손해방지또는경감에소요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합니다)의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비율에따라제20조(지급보험금)의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보상하여 드립니다.
솦 회사는 제20조(지급보험금)의지급보험금에제항의손해방지비용을합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더라도이를지급합니다.

제19조(손해액의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때와곳에있어서의보험가액에따라계산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
솩 회사가지급할제14조(보상하는손해)의보험금은아래에따라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같거나이상일때
: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③ 제1호 및 제2호에관계없이보험목적이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 많을때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솥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중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①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을같이하는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을달리하는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솦 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보험가액에 대한 각보험가액의비율로보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합니다

제21조(보험금등의지급한도)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의한보험금과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은각각지급보험금의계산을준용하여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제22조(보험금의분담)
솩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손해)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 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솥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23조(현물보상)
회사는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재건축, 수리또는현물의보상으로써보험금의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대위권)
솩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필요한비용은회사가드립니다.
솦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5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2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7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3.5%)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9조(중도인출)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5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연도 기준 연 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3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3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6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0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2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4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솥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제지급금과상계할수있습니다.
솦 제2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해지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상계할 수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5조(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47조(약관의해석)
솤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 따라다르게 해석하지아니합니다.
솥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48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장의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보험안내장(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하여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의내용이이약관의규정과다른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49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50조(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제51조(준거법)
이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2절 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

제52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7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의제1항제호에도불구하고보험목적이 있는구내에서생긴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손해를이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에 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

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등의물리적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53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항 의 제6호는 제외합니다)이외에도폭발또는파열의사고가났을때에생긴분실또는도난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4조(준용규정)
이 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에 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1절일반조항및화재손해조항을따릅니다.

제3절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손해조항

제55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보험기간 중에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시설(이하 "시설"이라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된시설에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용도에따른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수행으로생긴우연한사고로타인의신체에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입히거나타인의재물을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6조(지급보험금)
솤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손해는아래와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한법률상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것이있을때에는그가액을뺌)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방법을강구하기위하여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배상책임이없음이판명된때에는그방법을강구함에따른비용중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위하여지급한비용과지급에관하여미리회사의승인을받은비용만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권리의보전또는행사의절차를밟는데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④ 피보험자가회사의승인을받아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회사의요구에따르기 위하여 지급한비용
?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하는금액으로하되아래와같습니다.
① 제1항 제1호의손해배상금: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보상한도액을넘는경우에는제1항제2호의비용은보상한도액의제1항제1호의손해배상금에 대한비율에따라산출한금액

제5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솤 회사는피보험자가 아래의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연료를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 포함)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⑤ 제④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회사는피보험자가 다음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④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관계없이 모든 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손해를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배상책임. 그러나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신체장해에대한배상책임
⑥ 시설의수리, 개조, 신축 또는철거공사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하여드립니다.
⑦ 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또는관리화물의하역작업을포함합니다)하는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아래의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피보험자의시설내에서피보험자가소유, 임차또는사용하지아니하는자동차의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 피보험자의시설에양륙되어있는선박또는피보험자가요금을받지아니하고여객이나 물건을운송하는길이 26피트 이하의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양도한시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시설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⑨ 피보험자의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보증한성능, 품질적합성또는내구성의결함으로생긴물리적으로파손되지아니한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점유를벗어난음식물이나재물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작업의 종료 (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작업의결과로부담하는 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작업물건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의사(한의사및수의사를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에서보상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

는보상하여 드립니다.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생긴다른재물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티끌, 먼지,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발생할때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피보험자의고의인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도인출액이있었던경우이를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58조(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 회사에알리고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하든지 또는 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③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회사는 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보험료의증액을 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59조(손해의통지및조사)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② 제3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경우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제1호 및제2호의통지를게을리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소송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인정되는부분은 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60조(손해방지의무)
㉠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①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는일
②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의보전또는행사를위한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긴급조치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피보험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을 일
㉡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손해액을 아래에 따라결정합니다.

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경우에는 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다고인정되는부분을 뺍니다.
② 제1항의제2호의경우에는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③ 제1항의 제4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및변호사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1조(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 사고가 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 요구가있으면피보험자및계약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한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62조(보험금의분담)
①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때에는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위의합계액에대한비율에 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63조(양도)
이 보험목적의 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경우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그러나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법정대리인과법정대리인이선임될때까지의재산관리인을그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4조(조사)
① 회사는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중지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보험기간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65조(준용규정)
이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손해조항에 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1절 일반조항및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인한사망을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직접손해 2)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 생긴간접손해 3)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지지아니한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함은급격하게발생하는것을포함하여위험이서서히, 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를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사고라함은하나의원인또는사실상같은종류의위험에계속적, 반복적 또는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사고로써피보험자나피해자의수또는손해배상청구의수에관계없이 1회의사고로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법률상의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무배당 매직( )안심종합보험(L5.09)

4종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④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중도인출금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이 계약의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해약을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그청구에따라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때에는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하며, 회사는 제1항에서정한바에따라최고하고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지급합니다.

② 보험료수금방법이회사의방문수금또는계약자의은행수납방법으로약정되어있는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또는은행납입통지서의미교부로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를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하거나은행납입통지서를다시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그수금또는재교부일부터 15일이되는날을새로운납입기일로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위한보험의경우특정된수익자포함)에게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상계할수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기 15일 이전까지서면또는전화(음성녹음)로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 받지아니한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회사가정한절차에 따라계약의부활(효력회복)을청구할수있으며, 회사가 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효력회복)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보험료와이에대한연체된이자(보장보험료에대해서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부활(효력회복)에관하여는제15조(보험계약의성립), 제16조(회사의보장의시기 및 종기), 제32조(계약전알릴의무) 및 제34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등의지급(회사의주된의무)

제14조(보상하는손해)

① 회사는보험기간중 보험목적이화재(벼락을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합니다)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화재에따른손해
2. 화재에따른소방손해
3. 화재에따른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생긴 제1호, 제2호의손해를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전용주택및이에수용된가재일경우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위험으로인하여 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 비용은포함하지아니합니다) 및 상차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아니하는위험으로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15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아래의물건은보험목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1. 통화(기념주화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차, 자동차를포함합니다. 단, 전시용자동차는제외합니다)

② 아래의물건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점당 1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아래의물건은다른약정이없으면보험목적에포함됩니다.

1. 건물인경우
   - 가) 건물의부속물 : 피보험자소유인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부착물 : 피보험자소유인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다) 건물의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주택을보험목적으로 하는경우보험목적이라함은아래의물건을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중다음의것또는그수용가재
   -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나) 주택의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수용하는 건물
   -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모두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또는복리시설을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아래의용도로사용하는건물및그수용가재
   -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치료 (안수, 침구(침 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6조(보험목적에 대한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건물이나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중대한과실
2. 계약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4. 화재가났을때도난또는분실
5.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6.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전용주택의경우는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⑦ 동결로인한수도관, 수관또는수압기의파열
⑧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또는다수인의집단행동에의해전국또는일부지역에있어서 뚜렷이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사태
⑨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 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⑩ 제9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사고로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전기적사고로손해가생긴그전기기기또는장치이외의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또는파열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명령에의한재산의소각및이와유사한손해
쇱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사유중고의에의한경우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18조(손해방지의무)
쇽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손해를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쇱 회사는제항의손해방지또는경감에소요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합니다)의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비율에따라제20조(지급보험금)의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보상하여 드립니다.
쇲 회사는 제20조(지급보험금)의지급보험금에제항의손해방지비용을합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더라도이를지급합니다.

제19조(손해액의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때와곳에있어서의보험가액에따라계산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
쇽 회사가지급할제14조(보상하는손해)의보험금은아래에따라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같거나이상일때
: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③ 제1호 및 제2호에관계없이보험목적이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 많을때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쇱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중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①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을같이하는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을달리하는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쇲 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보험가액에 대한 각보험가액의비율로보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합니다

제21조(보험금등의지급한도)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의한보험금과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은각각지급보험금의계산을준용하여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제22조(보험금의분담)
쇽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손해)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 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쇱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23조(현물보상)
회사는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재건축, 수리또는현물의보상으로써보험금의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대위권)
쇽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필요한비용은회사가드립니다.
쇲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5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2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7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3.5%)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9조(중도인출)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5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연도 기준 연 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3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3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6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0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2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4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솥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제지급금과상계할수있습니다.
숖 제2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과 계약의해지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상계할 수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5조(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47조(약관의해석)
솤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 따라다르게 해석하지아니합니다.
솥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48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장의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보험안내장(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하여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의내용이이약관의규정과다른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49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50조(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제51조(준거법)
이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2절 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

제52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7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의 제1항 제호에도불구하고보험목적이 있는구내에서생긴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손해를이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에 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

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등의물리적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53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항 의 제6호는 제외합니다)이외에도폭발또는파열의사고가났을때에생긴분실또는도난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4조(준용규정)
이 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에 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1절일반조항및화재손해조항을따릅니다.

제3절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손해조항

제55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보험기간 중에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시설(이하 "시설"이라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된시설에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용도에따른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수행으로생긴우연한사고로타인의신체에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입히거나타인의재물을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6조(지급보험금)
솤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손해는아래와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한법률상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것이있을때에는그가액을뺌)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방법을강구하기위하여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배상책임이없음이판명된때에는그방법을강구함에따른비용중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위하여지급한비용과지급에관하여미리회사의승인을받은비용만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권리의보전또는행사의절차를밟는데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④ 피보험자가회사의승인을받아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회사의요구에따르기 위하여 지급한비용
?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하는금액으로하되아래와같습니다.
① 제1항 제1호의손해배상금: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보상한도액을넘는경우에는제1항제2호의비용은보상한도액의제1항제1호의손해배상금에 대한비율에따라산출한금액

제5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솤 회사는피보험자가 아래의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연료를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 포함)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⑤ 제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솥 회사는피보험자가 다음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④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관계없이 모든 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손해를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배상책임. 그러나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신체장해에대한배상책임
⑥ 시설의수리, 개조, 신축 또는철거공사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하여드립니다.
⑦ 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또는관리화물의하역작업을포함합니다)하는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아래의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피보험자의시설내에서피보험자가소유, 임차또는사용하지아니하는자동차의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 피보험자의시설에양륙되어있는선박또는피보험자가요금을받지아니하고여객이나 물건을운송하는길이 26피트 이하의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양도한시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시설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⑨ 피보험자의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보증한성능, 품질적합성또는내구성의결함으로생긴물리적으로파손되지아니한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점유를벗어난음식물이나재물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작업의 종료 (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작업의결과로부담하는 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작업물건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의사(한의사및수의사를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에서보상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

는보상하여 드립니다.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생긴다른재물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티끌, 먼지,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숄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발생할때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피보험자의고의인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도인출액이있었던경우이를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58조(계약후알릴의무)
쇽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 회사에알리고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하든지 또는 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③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숄 회사는 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보험료의증액을 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59조(손해의통지및조사)
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② 제3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경우
숄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제1호및제2호의통지를게을리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소송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인정되는부분은 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60조(손해방지의무)
쇽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①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는일
②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의보전또는행사를위한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긴급조치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피보험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을 일
숄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손해액을 아래에 따라결정합니다.

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경우에는 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다고인정되는부분을 뺍니다.
② 제1항의제2호의경우에는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③ 제1항의 제4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및변호사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1조(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 사고가 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 요구가있으면피보험자및계약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한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62조(보험금의분담)

①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때에는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위의합계액에대한비율에 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63조(양도)

① 이 보험목적의 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경우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그러나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법정대리인과법정대리인이선임될때까지의재산관리인을그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4조(조사)

① 회사는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중지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보험기간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65조(준용규정)

이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손해조항에 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1절 일반조항및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인한사망을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직접손해 2)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 생긴간접손해 3)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지지아니한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함은급격하게발생하는것을포함하여위험이서서히, 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를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사고라함은하나의원인또는사실상같은종류의위험에계속적, 반복적 또는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사고로써피보험자나피해자의수또는손해배상청구의수에관계없이 1회의사고로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법률상의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제4절 강도손해위로금조항

제66조(보상하는손해)

① 회사는피보험자또는그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 고용인, 고객등이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구내에서제3자의폭행또는협박에의해재물을강제로빼앗김으로서 손해(이하 "강도손해"라 합니다)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강도손해위로금보험가입금액을 강도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의 강도손해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9조에 정한강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손해만을말하며단순한절도행위(형법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결과로생긴손해는강도손해로보지아니합니다.

제6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같은강도손해에 대하여는위로금을 지급하지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손해
②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이와유사한사변중에생긴강도손해
③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또는그밖의변재가일어났을때에생긴강도손해

제68조(손해의통지및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보험목적에 손해가생긴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아래의서류를빠른시일안에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① 관할경찰서의강도신고확인서
② 그밖의필요한증거서류
②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솥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9조(준용규정)
이 장 도손해위로금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 1 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단, 제20조(지급보험금)은 제외합니다.

제5절 점포휴업손해조항

제7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피보험자가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내 중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아래의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 손해 " 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
② 벼락
③ 파열 또는 폭발
④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⑤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제7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제 1 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외에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②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③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제72조(지급보험금)
솥 피보험자가 제7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손실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휴업손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휴업일수 비율

솥 제1항의 휴업손실 보험금은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복구기간내에 지출하지 않은 경상비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3조(특별비용)
솥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7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을 입고 휴업일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추가비용(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을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 " 특별비용 " 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솥 제항의 특별비용은 그 비용지출에 의해 감소된 휴업일수 비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4조(중복지급)
회사는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실보험금과 특별비용보험금을 합하여 보상할 경우에는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75조(매출액, 지급한도율의 조정)
영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영향이 있었을 때 또는 영업의 추세가 뚜렷이 변화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한도율에 대해 공평한 조정을 행합니다.

제76조(중복보험)
제7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하 " 보상책임합계액 " 이라 합니다)이 제72조(지급보험금) 및 제73조(특별비용)의 휴업손실 보험금과 특별비용의 합계액(이하 " 손해액 " 이라 합니다)을 넘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보상책임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77조(보험가입금액의 자동복원)
회사가 제72조(지급보험금)의 휴업손실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78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제7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때 이 계약은 손해발생 시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9조(용어의 정의)
①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을 말합니다.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복구기간 : 보험금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한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는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총이익 : 매출에서 상품매입비 및 원재료비(기초재고량을 더하고, 기말재고량을 뺍니다)를 뺀 잔액을 말합니다.
⑤ 경상비 : 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⑥ 매출감소액 : 사고직전 12개월중 복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복구기간내의 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⑦ 휴업일수 비율

$$\text{휴업일수비율} = \frac{\text{복구기간내의 휴업일수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text{약정복구기간내의 영업가능일수 (공휴일을 제외하며,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부터 기산)}}$$

단, 일부휴업의 경우에는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휴업일수의 조정을 해야합니다.
⑧ 지급한도율

$$\text{지급한도율} = \frac{\text{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총 이익} \times 1.1}{\text{최근 회계연도(1년간)의 매출액}}$$

제80조(준용규정)
이 점포휴업손해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무배당 매직( )안심종합보험(L5.09)

5종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중도인출금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이 계약의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6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 비용은포함하지아니합니다) 및 상차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아니하는위험으로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15조(보험목적의 범위)

㉲ 아래의물건은보험목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① 통화(기념주화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것
② 자동차(자동2륜차, 자동3륜차를포함합니다. 단, 전시용자동차는제외합니다)
㉳ 아래의물건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보험목적이 됩니다.
① 귀금속, 귀중품(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점당 1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제외합니다.
②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 아래의물건은다른약정이없으면보험목적에포함됩니다.
① 건물인경우
㉮ 건물의부속물 : 피보험자소유인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것
㉯ 건물의부착물 : 피보험자소유인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것
㉰ 건물의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가재인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 주택을보험목적으로 하는경우보험목적이라함은아래의물건을말합니다.
① 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중다음의것또는그수용가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주택의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수용하는 건물
㉰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모두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또는복리시설을포함합니다.
② 주택병용 건물로써아래의용도로사용하는건물및그수용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 (안수,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6조(보험목적에 대한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건물이나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중대한과실
② 계약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④ 화재가났을때도난또는분실
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⑥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전용주택의경우는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⑦ 동결로인한수도관, 수관또는수압기의파열
⑧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또는다수인의집단행동에의해전국또는일부지역에있어서 뚜렷이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사태
⑨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 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 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⑩ 제9호 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사고로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전기적사고로손해가생긴그전기기기또는장치이외의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또는파열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명령에의한재산의소각및이와유사한손해
㉳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사유중고의에의한경우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18조(손해방지의무)

㉲ 회사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손해를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회사는제1항의손해방지또는경감에소요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합니다)의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비율에따라제20조(지급보험금)의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20조(지급보험금)의지급보험금에제1항의손해방지비용을합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더라도이를지급합니다.

제19조(손해액의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때와곳에있어서의보험가액에따라계산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

㉲ 회사가지급할제14조(보상하는손해)의보험금은아래에따라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같거나이상일때
: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③ 제1호 및 제2호에관계없이보험목적이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 많을때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①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을같이하는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을달리하는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보험가액에 대한 각보험가액의비율로보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합니다

제21조(보험금등의지급한도)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의한보험금과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은각각지급보험금의계산을준용하여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제22조(보험금의분담)

①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손해)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 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23조(현물보상)

회사는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재건축, 수리또는현물의보상으로써보험금의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대위권)

①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필요한비용은회사가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5조(잔존물)

회사가잔존물을 인수하지아니할뜻을나타내고손해를보상한경우에는그잔존물은피보험자의 소유가됩니다.

제2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계약자가 보험료를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때에는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보험료납입경과기간에따라제27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회사가적립한금액(중도인출액이있었던경우에는이를차감하여계산된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

①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보험료납입경과기간에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3.5%)을적용합니다.

②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 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28조(배당금의지급)

회사는이보험에대하여계약자에게배당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제29조(중도인출)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경우에한하여계약자가요청한시점에서계산된적립부분해약환급금(이계약에서 정한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후의잔액을기준으로합니다)의 50%범위 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연도기준연 2회에한하여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및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31조(보험금청구권의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보험금청구권을잃게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손해통지또는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하거나변조한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이유없이손해의조사를방해또는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32조(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시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33조(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보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 지체 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① 보험목적에대하여이보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을맺을때

② 보험목적을양도할때

③ 그건물의구조를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이상수선할때

④ 보험목적 또는보험목적을수용하는건물의용도를변경함으로써위험이증가하는경우

⑤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들어있는건물을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⑥ 보험목적을다른장소로옮길때

⑦ 위이외에위험이뚜렷이증가할때

㉡ 회사는 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34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

㉠ 회사는 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2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②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33조(계약후알릴의무) 제1항에서 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③ 상당한이유없이손해조사를거부또는회피할때

㉡ 제1항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②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을때

③ 보험을모집한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제1항에의한계약의해지가손해발생전에이루어진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 제1항 제1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손해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라는 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많은금액을지급합니다.

㉤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제2호에해당되는사실로생긴것이아닌것으로증명된때에는제1항에관계없이보상하여드립니다.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년이지났을때에는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의사표시)중사기에의한취소권을행사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36조(주소변경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 또는 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대표자의지정)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 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이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38조(손해의통지및조사)

㉠ 보험목적에 손해가생긴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생긴건물또는그구내와거기에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조사할수있습니다.

제39조(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이를얻기어려울때에는사고발생의목격자등인근주민의확인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수익자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40조(보험금의지급)

㉠ 회사는 제39조(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에서정한청구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그서류를접수한날로부터배상책임손해에대한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대한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드립니다.

㉡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초과가명백히예상되는 경우에는구체적사유와지급예정일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에게서면통지하여드립니다.

㉢ 제2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또는수익자의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4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2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4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0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절 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

제5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

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등의물리적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53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항의 제6호는 제외합니다)이외에도폭발또는파열의사고가났을때에생긴분실또는도난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4조(준용규정)
이 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에 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1절일반조항및화재손해조항을따릅니다.

제3절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손해조항

제55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보험기간 중에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시설(이하 "시설"이라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된시설에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용도에따른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수행으로생긴우연한사고로타인의신체에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입히거나타인의재물을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6조(지급보험금)
㈜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손해는아래와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한법률상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그가액을 뺌)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방법을강구하기위하여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배상책임이없음이판명된때에는그방법을강구함에따른비용중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위하여지급한비용과지급에관하여미리회사의승인을받은비용만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권리의보전또는행사의절차를밟는데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④ 피보험자가회사의승인을받아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회사의요구에따르기 위하여 지급한비용
?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하는금액으로하되아래와같습니다.
① 제1항 제1호의손해배상금: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보상한도액을넘는경우에는제1항제4호의비용은보상한도액의제1항제1호의손해배상금에 대한비율에따라산출한금액

제5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피보험자가 아래의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연료를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 포함)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⑤ 제4호 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회사는피보험자가 다음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④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관계없이 모든 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손해를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배상책임. 그러나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신체장해에대한배상책임
⑥ 시설의수리, 개조, 신축 또는철거공사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하여드립니다.
⑦ 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또는관리화물의하역작업을포함합니다)하는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아래의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피보험자의시설내에서피보험자가소유, 임차또는사용하지아니하는자동차의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 피보험자의시설에양륙되어있는선박또는피보험자가요금을받지아니하고여객이나 물건을운송하는길이 26피트 이하의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양도한시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시설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⑨ 피보험자의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보증한성능, 품질적합성또는내구성의결함으로생긴물리적으로파손되지아니한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점유를벗어난음식물이나재물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작업의 종료 (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작업의결과로부담하는 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작업물건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의사(한의사및수의사를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과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에서보상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대한손해

는보상하여 드립니다.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생긴다른재물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티끌, 먼지,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숊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발생할때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피보험자의고의인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도인출액이있었던경우이를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58조(계약후알릴의무)
쇽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 회사에알리고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하든지 또는 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③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숄 회사는 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보험료의증액을 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59조(손해의통지및조사)
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② 제3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경우
숄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제1호및제2호의통지를게을리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소송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인정되는부분은 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60조(손해방지의무)
쇽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①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는일
②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의보전또는행사를위한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긴급조치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피보험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을 일
숄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손해액을 아래에 따라결정합니다.

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경우에는 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다고인정되는부분을 뺍니다.
② 제1항의제2호의경우에는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③ 제1항의 제4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및변호사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1조(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 해결)
쇽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 사고가 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숄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 요구가있으면피보험자및계약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합니다.
숊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숑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한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62조(보험금의분담)
쇽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때에는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위의합계액에대한비율에 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숄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63조(양도)
이 보험목적의 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경우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그러나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법정대리인과법정대리인이선임될때까지의재산관리인을그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4조(조사)
쇽 회사는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숄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중지할수있습니다.
숊 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보험기간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65조(준용규정)
이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손해조항에 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1절일반조항및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인한사망을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직접손해 2)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 생긴간접손해 3)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지지아니한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함은급격하게발생하는것을포함하여위험이서서히, 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를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사고라함은하나의원인또는사실상같은종류의위험에계속적, 반복적 또는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사고로써피보험자나피해자의수또는손해배상청구의수에관계없이 1회의사고로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법률상의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제4절 음식물배상책임손해조항

제66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제조, 판매또는공급한후그음식물로생긴우연한사고(이하 " 사고 "라합니다)로 인하여타인의신체에대한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67조(지급보험금)

㉠ 회사가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한법률상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기위하여지급한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비용과지급에관하여미리회사의승인을받은비용만보상하여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의보전또는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승인을받아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또는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할경우피보험자가회사의요구를따르기 위하여 지급한비용

⑥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아니합니다.

㉡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보상하되보상한도는아래와같습니다.

① 제1항의제2호의손해배상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

②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비용합계 : 매사고마다 50만원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해보험년도(초년도는보험기간의첫날로부터 1년간, 다음년도 이후는 각각보험기간의 첫날 해당일로부터 1년을말합니다)중발생하는사고에대한회사의보상총액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한도로합니다.

제68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피보험자가 아래의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또는피보험자(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연료를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 포함)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⑤ 제4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회사는피보험자가 아래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제조, 판매 또는공급한 음식물로생긴배상책임

②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관계없이 모든 형태의실질적인 통제를 의미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사람에대한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민법제 777조규정의범위와같습니다)에대한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 (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생긴배상책임

⑤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배출되는배수또는배기(연기를포함합니다)로생긴배상책임

⑥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또는공급한음식물및피보험자가수행한작업상의결함으로인한당해음식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음식물에대하여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생긴배상책임손해및오염제거비용

⑨ 결함있는 음식물의회수, 검사또는대체비용에 대한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손해

㉢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발생할때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피보험자의고의인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도인출액이있었던경우이를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69조(계약후알릴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 회사에알리고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제70조(손해의통지및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제3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경우

②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제1호및제2호의통지를게을리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소송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인정되는부분은 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7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는일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의보전또는행사를위한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긴급조치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피보험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손해액을 아래에 따라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경우에는 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다고인정되는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제2호의경우에는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및변호사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2조(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 요구가있으면피보험자및계약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한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7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제74조(보험금의 분담)의 규정에도불구하고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보상되는배상책임손해가발생할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는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금액만을보상하는책임을 집니다.

제74조(보험금의분담)

①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 같은 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이있을경우에는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75조(준용규정)

이 음식물배상책임손해조항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을따릅니다.

제5절 가스사고배상책임손해조항

제76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중에발생한가스사고로인하여타인의신체또는재물에대한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 가스사고 : 가스로인한폭발, 파열, 화재및가스의누출로타인의신체에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일시에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포함)를입히거나재물을없어짐, 손상, 망가지게 하는것을말함

제77조(지급보험금)

① 1사고당 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한법률상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기위하여지급한필요 또는 유익하였던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강구한후에배상책임이없음이판명된때에는그방법을강구함에따른비용중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회사의승인을받은비용만보상하여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제2호의 손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6,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
②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1](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③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치된 후에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에 정하는 금액
④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⑤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산액
⑥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⑦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가 가입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②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1](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③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2-1](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서정하는 금액
④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산액
⑤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산액
⑥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⑦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에 대한 회사의 총 보상한도는 매사고마다 100만원으로 합니다.

제7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④ 배출시설에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⑦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배상책임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9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③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0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②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1조(손해방지의무)

솩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에 그 동의를 받을 일

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뺍니다.

② 제1항의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협력)

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솥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솦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솧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제84조(보험금의 분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84조(보험금의 분담)

솩 이 계약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그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솥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85조(준용규정)

이 가스사고배상책임손해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무배당 매직( )안심종합보험(L5.09)

6종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③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중도인출금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이 계약의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해약을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그청구에따라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때에는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하며, 회사는 제1항에서정한바에따라최고하고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지급합니다.

② 보험료수금방법이회사의방문수금또는계약자의은행수납방법으로약정되어있는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또는은행납입통지서의미교부로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를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하거나은행납입통지서를다시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그수금또는재교부일부터 15일이되는날을새로운납입기일로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위한보험의경우특정된수익자포함)에게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경우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상계할수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기 15일 이전까지서면또는전화(음성녹음)로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 받지아니한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회사가정한절차에 따라계약의부활(효력회복)을청구할수있으며, 회사가 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효력회복)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보험료와이에대한연체된이자(보장보험료에대해서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부활(효력회복)에관하여는제15조(보험계약의성립), 제16조(회사의보장의시기 및 종기), 제32조(계약전알릴의무) 및 제34조(알릴의무위반의효과)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등의지급(회사의주된의무)

제14조(보상하는손해)

① 회사는보험기간중 보험목적이화재(벼락을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합니다)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화재에따른손해
2. 화재에따른소방손해
3. 화재에따른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제1호, 제2호의손해를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전용주택및이에수용된가재일경우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위험으로인하여 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④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 비용은포함하지아니합니다) 및 상차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아니하는위험으로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15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아래의물건은보험목적에포함되지아니합니다.

1. 통화(기념주화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차, 자동차를포함합니다. 단, 전시용자동차는제외합니다)

② 아래의물건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하여야만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부피가휴대할수있으며점당 1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아래의물건은다른약정이없으면보험목적에포함됩니다.

1. 건물인경우
   - 가) 건물의부속물 : 피보험자소유인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부착물 : 피보험자소유인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다) 건물의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인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주택을보험목적으로 하는경우보험목적이라함은아래의물건을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중다음의것또는그수용가재
   -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나) 주택의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수용하는 건물
   -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모두주택으로만쓰이는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또는복리시설을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아래의용도로사용하는건물및그수용가재
   -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치료 (안수, 침구(침 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6조(보험목적에 대한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건물이나구내를조사할수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중대한과실
2. 계약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4. 화재가났을때도난또는분실
5.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6.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 (전용주택의경우는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드립니다.

⑦ 동결로인한수도관, 수관또는수압기의파열
⑧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또는다수인의집단행동에의해전국또는일부지역에있어서 뚜렷이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사태
⑨ 핵연료물질(사용이끝난연료를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 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⑩ 제9호 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사고로생긴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전기적사고로손해가생긴그전기기기또는장치이외의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또는파열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명령에의한재산의소각및이와유사한손해
쇱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사유중고의에의한경우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 제2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18조(손해방지의무)
쇽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손해의방지와경감에힘써야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를게을리한때에는손해를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쇱 회사는제항의손해방지또는경감에소요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합니다)의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비율에따라제20조(지급보험금)의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보상하여 드립니다.
쇱 회사는 제20조(지급보험금)의지급보험금에제항의손해방지비용을합한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초과하더라도이를지급합니다.

제19조(손해액의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때와곳에있어서의보험가액에따라계산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
쇽 회사가지급할제14조(보상하는손해)의보험금은아래에따라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같거나이상일때
: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③ 제1호 및 제2호에관계없이보험목적이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보험가액보다 많을때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쇱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①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을같이하는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계약이이계약과지급보험금의계산방법을달리하는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쇲 하나의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보험가액에 대한 각보험가액의비율로보험가입금액을비례배분합니다

제21조(보험금등의지급한도)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의한보험금과제14조(보상하는 손해)의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은각각지급보험금의계산을준용하여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제22조(보험금의분담)
쇽 회사는 제14조(보상하는손해)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 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대한비율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쇱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23조(현물보상)
회사는손해의일부또는전부에대하여재건축, 수리또는현물의보상으로써보험금의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대위권)
쇽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한도내에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필요한비용은회사가드립니다.
쇲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5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26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7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예정이율(3.5%)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9조(중도인출)
계약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써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5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연도 기준 연 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제3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2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3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3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6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 주민의 확인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0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서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2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4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솥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제지급금과상계할수있습니다.
숖 제2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과 계약의해지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상계할 수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5조(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47조(약관의해석)
솤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 따라다르게 해석하지아니합니다.
솥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48조(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장의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보험안내장(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하여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의내용이이약관의규정과다른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49조(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50조(예금보험기금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제51조(준거법)
이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2절 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

제52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7조(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의 제1항 제호에 도불구하고보험목적이 있는구내에서생긴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손해를이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에 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

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등의물리적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생긴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53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항 의 제6호는 제외합니다)이외에도폭발또는파열의사고가났을때에생긴분실또는도난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4조(준용규정)
이 구내폭발파열손해조항에 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1절일반조항및화재손해조항을따릅니다.

제3절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손해조항

제55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보험기간 중에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시설(이하 "시설"이라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된시설에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용도에따른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수행으로생긴우연한사고로타인의신체에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입히거나타인의재물을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6조(지급보험금)
솤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손해는아래와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한법률상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것이있을때에는그가액을뺌)
②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방법을강구하기위하여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배상책임이없음이판명된때에는그방법을강구함에따른비용중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위하여지급한비용과지급에관하여미리회사의승인을받은비용만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권리의보전또는행사의절차를밟는데지급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④ 피보험자가회사의승인을받아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회사의요구에따르기 위하여 지급한비용
?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하는금액으로하되아래와같습니다.
① 제1항 제1호의손해배상금: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보상한도액을넘는경우에는제항제호의비용은보상한도액의제항제호의손해배상금에 대한비율에따라산출한금액

제57조(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솤 회사는피보험자가 아래의사유로생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는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연료를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 포함)의방사성, 폭발성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⑤ 제④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 회사는피보험자가 다음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④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관계없이 모든 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손해를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배상책임. 그러나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의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신체장해에대한배상책임
⑥ 시설의수리, 개조, 신축 또는철거공사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은보상하여드립니다.
⑦ 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또는관리(화물의하역작업을포함합니다)하는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아래의손해는보상하여드립니다.
㉮ 피보험자의시설내에서피보험자가소유, 임차또는사용하지아니하는자동차의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 피보험자의시설에양륙되어있는선박또는피보험자가요금을받지아니하고여객이나 물건을운송하는길이 26피트 이하의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양도한시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과시설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⑨ 피보험자의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보증한성능, 품질적합성또는내구성의결함으로생긴물리적으로파손되지아니한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점유를벗어난음식물이나재물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작업의 종료 (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작업의결과로부담하는 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작업물건자체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의사(한의사및수의사를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에서보상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

는보상하여 드립니다.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생긴다른재물의손해에대한배상책임
? 티끌, 먼지,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발생할때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피보험자의고의인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도인출액이있었던경우이를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58조(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 회사에알리고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하든지 또는 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③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회사는 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보험료의증액을 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59조(손해의통지및조사)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② 제3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경우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제1호 및제2호의통지를게을리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소송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인정되는부분은 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60조(손해방지의무)
㉠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①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는일
②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의보전또는행사를위한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긴급조치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피보험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을 일
㉡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그손해액을 아래에 따라결정합니다.

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경우에는 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다고인정되는부분을 뺍니다.
② 제1항의제2호의경우에는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③ 제1항의 제4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및변호사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1조(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 사고가 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 요구가있으면피보험자및계약자는필요한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아니한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62조(보험금의분담)
①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때에는회사는이계약에의한보상책임액의위의합계액에대한비율에 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합니다.

제63조(양도)
① 이 보험목적의 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경우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그러나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법정대리인과법정대리인이선임될때까지의재산관리인을그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4조(조사)
① 회사는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중지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보험기간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65조(준용규정)
이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손해조항에 정하지아니한사항은제1절 일반조항및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인한사망을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직접손해 2)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진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 생긴간접손해 3)물리적으로망그러뜨려지지아니한유체물의사용불능으로생긴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함은급격하게발생하는것을포함하여위험이서서히, 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를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사고라함은하나의원인또는사실상같은종류의위험에계속적, 반복적 또는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사고로써피보험자나피해자의수또는손해배상청구의수에관계없이 1회의사고로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법률상의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제4절 음식물배상책임손해조항

제66조(보상하는손해)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제조, 판매또는공급한후그음식물로생긴우연한사고(이하 " 사고 "라합니다)로 인하여타인의신체에대한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67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한법률상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기위하여지급한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비용과지급에관하여미리회사의승인을받은비용만보상하여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승인을받아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또는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할경우피보험자가회사의요구를따르기 위하여 지급한비용
6.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기재된자기부담금을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보상하되보상한도는아래와같습니다.

①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②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합계 : 매사고마다 50만원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당해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1년간, 다음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첫날 해당일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⑤ 제2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를 의미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 (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⑤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음식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⑨ 결함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9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③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0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②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1조(손해방지 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②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③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⑷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⑸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⑹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제74조(보험금의 분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74조(보험금의 분담)

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⑵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75조(준용규정)

이 음식물배상책임손해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제5절 가스사고배상책임손해조항

제76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스사고 :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 포함)를 입히거나 재물을 없어짐, 손상,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함

제77조(지급보험금)

⑴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⑵ 제1항의 제2호의 손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6,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

②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1](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③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치된 후에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에 정하는 금액

④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⑤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산액

⑥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⑦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⑶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가 가입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②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1](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정하는 금액

③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2-1](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에 서정하는 금액

④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산액

⑤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산액

⑥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⑦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⑷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에 대한 회사의 총 보상한도는 매사고마다 100만원으로 합니다.

제7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
③ 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오염된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그밖의유해한특성에의한사고
⑤ 제4호 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
쇱 회사는피보험자가 아래에열거한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사람에대한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업무에종사중입은신체의장해 (장해로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배상책임
④ 배출시설에통상적으로배출되는 배수또는배기연기를포함합니다)로생긴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따라가중된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선박또는항공기의소유, 사용또는관리에기인하는배상책임
⑦ 가스사고를수반하지 않은자동차사고로 인한배상책임
⑧ 피보험자가판매, 공급한 재물또는피보험자가수행한작업상의결함으로인한당해재물또는작업목적물의망그러뜨림그자체에따른배상책임
숄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발생할때에는이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과같이합니다.
① 피보험자의고의인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중도인출액이있었던경우이를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79조(계약후알릴의무)
쇽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계약을맺은후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지체없이서면으로 회사에알리고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하든지 또는 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③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숄 회사는 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보험료의증액을 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80조(손해의통지및조사)
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으로회사에알려야합니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있을경우에는그주소와성명
②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③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숄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제1호및제2호의통지를게을리함으로인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소송비용과 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인정되는부분은 보상하지아니합니다.

제81조(손해방지의무)
쇽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①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한일체의방법을강구하는일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그밖의긴급조치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피보험자가소송을제기하려고할때에는미리회사에그동의를 받을 일
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손해액을 아래에 따라결정합니다.
①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경우에는 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다고인정되는손해액을 뺍니다.
② 제1항의제2호의경우에는회사는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인정되는부분을뺍니다.
③ 제1항의 제4호의경우에는그소송비용과회사가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2조(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 해결)
쇽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 사고가 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에서 회사에 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수있습니다.
숄 회사는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 요구가있으면피보험자 및 계약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 합니다.
숗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 경우에회사의 요구가 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숗 계약자 또는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 3항의 요구에협조하지아니한 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제83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제84조(보험금의 분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보상되는배상책임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책임을집니다.

제84조(보험금의분담)

㈜ 이 계약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그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85조(준용규정)
이 가스사고배상책임손해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제6절 강도손해위로금조항

제86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서 손해(이하 "강도손해"라 합니다)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강도손해위로금 보험가입금액을 강도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 제1항에서의 강도손해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9조에 정한 강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해만을 말하며 단순한 절도행위(형법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강도손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8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강도손해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손해
②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③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제88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관할경찰서의 강도신고확인서
② 그 밖의 필요한 증거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9조(준용규정)
이 강도손해위로금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단, 제20조(지급보험금)은 제외합니다.

제7절 점포휴업손해조항

제9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피보험자가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내 중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아래의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드립니다.
① 화재
② 벼락
③ 파열 또는 폭발
④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⑤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제9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 제1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외에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②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③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제92조(지급보험금)
㈜ 피보험자가 제9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손실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휴업손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휴업일수 비율

㈜ 제1항의 휴업손실 보험금은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복구기간내에 지출하지 않은 경상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3조(특별비용)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9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을 입고 휴업일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추가비용(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을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 "특별비용"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드립니다.
㈜ 제1항의 특별비용은 그 비용지출에 의해 감소된 휴업일수 비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4조(중복지급)
회사는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실보험금과 특별비용보험금을 합하여 보상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95조(매출액, 지급한도율의 조정)
영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영향이 있었을 때 또는 영업의 추세가 뚜렷이 변화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한도율에 대해 공평한 조정을 행합니다.

제96조(중복보험)
제9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

각의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하 "보상책임합계액"이라 합니다)이 제92조(지급보험금) 및 제93조 (특별비용)의 휴업손실 보험금과 특별비용의 합계액(이하 "손해액"이라 합니다)을 넘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보상책임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97조(보험가입금액의 자동복원)

회사가 제92조(지급보험금)의 휴업손실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98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제9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때 이 계약은 손해발생 시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9조(용어의 정의)

①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을 말합니다.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복구기간 :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한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는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총이익 : 매출에서 상품매입비 및 원재료비 (기초재고량을 더하고, 기말재고량을 뺍니다)를 뺀 잔액을 말합니다.
⑤ 경상비 : 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⑥ 매출감소액 : 사고직전 12개월중 복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복구기간내의 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⑦ 휴업일수 비율

$$\text{휴업일수비율} = \frac{\text{복구기간내의 휴업일수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text{약정복구기간내의 영업가능 일수 (공휴일을 제외하며,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부터 기산)}}$$

단, 일부휴업의 경우에는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휴업일수의 조정을 해야합니다.
⑧ 지급한도율

$$\text{지급한도율} = \frac{\text{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총이익} \times 1.1}{\text{최근 회계연도(1년간)의 매출액}}$$

제100조(준용규정)

이 점포휴업손해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 및 화재손해조항을 따릅니다.

【별표1】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가스사고배상책임/신체손해배상책임)

상해급별	보상금액	상 해 부 위
1급	1,500 만원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제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 두 개강내 출혈로 개두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골절 9. 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이상인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하여 유경식 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 밖의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 만원	1. 상박골간부 분쇄성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뚜렷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관절탈구 9. 그 밖의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750 만원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 족근골척골간 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관절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등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 밖의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 만원	1. 대퇴골과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태 10.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500 만원	1. 골반골의 중복골절 (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또는 외측부인대파열 4. 족중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 늑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 수장부근건파열창 11. 아키레스건파열 12. 2도화상등의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이상인 상해 13.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 밖의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보상 금액	상 해 부 위
6급	400 만원	1. 소아의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중족골골절 5. 치골 · 좌골 · 장골의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중수골골절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좌상으로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 그 밖의 6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7급	250 만원	1. 소아의상지장간골간부골절 2. 족관절내과골또는외과골골절 3. 상박골상과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도화상등연부조직손상이체표의약 4.5% 이상인 상해 9.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0. 그 밖의 7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8급	180 만원	1. 상박골절과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 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골절또는하악골골절 11. 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 그 밖의 8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9급	140 만원	1. 척추의극상돌기또는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 (주상골을제외한다) 7. 족근골골절 (거골, 중골을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 늑골골절 11. 척추체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된상해 12. 완관절탈구 13.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 밖의 9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0급	120 만원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절골절(비골<코 골 절? 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다) 6.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7. 그 밖의 10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상해 급별	보상 금액	상 해 부 위
11급	100 만원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 (코) 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7. 그 밖의 1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2급	60 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이상 5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3급	40 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14급	20 만원	1. 3일이하의입원을요하는상해 2. 7일이하의통원을요하는상해 3. 1치이하의치아보철을요하는상해

≪ 비 고 ≫

1. 2급 내지 11급까지의상병명중개방성골절은해당등급보다한급높이보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상병명중단순성선상골절로골편의전위가없는골절의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한급낮게보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상병명중 2가지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등급에해당 는 상해로부터하위 3등급 (예 : 2급이 주종일때에는 5급까지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한하여한급높이보상한다.
4. 일반외상과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금액의합산액을배상한다.

【별표2】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금표 (가스사고배상책임)

등급	보상금액	신 체 장 해
1급	6,000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5,4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4,8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4,2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3,6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3,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관절 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급	보상금액	신 체 장 해
7급	2,4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1,8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1,44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등별	보상금액	신 체 장 해
10급	1,08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84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600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소된 사람 5. 쇄골 · 흉골 · 늑골 · 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36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등별	보상금액	신 체 장 해
14급	24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

1.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등급 높이 보상 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국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소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2-1】 후유장해급별지급보험금표 (가스사고배상책임/신체손해배상책임)

등급	보상 금액	신 체 장 해
1급	8,000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뚜렷한장해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 다리를무릎관절 이상에서잃은사람 9. 두 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7,2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사람 4. 두 다리를발목관절 이상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수시로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6,4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음식물을 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 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4급	5,6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 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5. 한 다리를무릎관절 이상에서잃은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사람
5급	4,8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발목관절이상에서잃은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 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특별히손쉬운 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 남아 특 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6급	4,0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음식물을 씹는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결손이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 두 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는큰 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한 귀가 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된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된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관절이못쓰게된사람 8. 한 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등급	보상 금액	신 체 장 해
7급	3,200 만원	1. 한눈이실명되고다른눈의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귀가전혀들리지아니하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못하는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장해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 종사하지못하는사람 6.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손의 5개의손가락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사람 9.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10. 한다리에가관절이 남아뚜렷한운동장해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이모두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남은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2,400 만원	1. 한눈의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 사람 또는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을 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다리에가관절이 남은사람 10. 한발의 5개의발가락을 모두잃은사람 11. 비장 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9급	1,8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 0.6이하로된사람 2. 한눈의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눈에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 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기능에장해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귀의청력이귓바퀴에대고말하지아니하고는큰 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잃은사람 10. 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 된 사람 12. 한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발의발가락이모두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해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해가남아종사할 수있는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해가남아종사할수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제한된사람

등별	보상금액	신 체 장 해
10급	1,5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1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1,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000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소된 사람 5. 쇄골 · 흉골 · 늑골 · 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1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8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등별	보상금액	신 체 장 해
14급	50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

1.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등급 높이 보상 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국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소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는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여,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11번 항목은 신체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만 해당됨)